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7호 2017. 9. 15(금)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7-11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124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2017-1248호 공시송달공고(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 3
- 남원시 공고 제2017-1253호 공시송달공고(8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 5
- 남원시 공고 제2017-1254호 공시송달공고(6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 7
- 남원시 공고 제2017-1255호 공시송달공고(7월 수시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 9
- 남원시 공고 제2017-1257호 공시송달공고(7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 11
- 남원시 공고 제2017-1258호 공시송달공고(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 13
- 남원시 공고 제2017-1268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14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 - 11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15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1	주차장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96-6번지 일원	4,942	감) 518	4,002	남원시 고시 제2008-53호 (2008.9.19.)	-

2.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201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96-6번지 일원	4,942 ⇒ 4,002 감) 518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월행복센터를 공영주차장 중 미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자 함.

3.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17-124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 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11.

남 원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7. 9. 11.~2017. 9. 25.(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환수결정액	처분내용	비고
대한복지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미○한 의원) (대표자 최○식)	전북 남원시 남문로 ***	폐문부재	29,833,500원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징수)	
화타요양병원 (대표자 장○기)	전북 남원시 지리산로 ****	폐문부재	268,070,480원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징수)	
비전보건의료생활협 동조합 (대표자 이○균)	전북 남원시 용성로 ***-	폐문부재	23,285,340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징수)	

5. 공시송달 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를 통보하오니 2017. 9. 25.(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고지서 별첨)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계 (☎ 063-620-6825)

남원시 공고 제2017 - 1248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5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7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
- 3. 납부기한 : 2017. 9. 30
-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본세	공고사유	간주납기
장**훈	63 **** -***** *	140001 2017 08 2 330 001463	2,196,980	이사감	20170930
심**연	78 **** -***** *	140001 2017 08 2 450 001628	15,030	이사감	20170930
박**경	73 **** -***** *	140001 2017 08 2 470 001219	5,110	수취인,주 소,거소,영 업소불명	20170930
박**운	72 **** -***** *	140001 2017 08 2 520 001254	300,420	기타	20170930
김**철	59 **** -***** *	140001 2017 08 2 570 001378	90,340	기타	20170930
김**희	56 **** -***** *	140001 2017 08 2 570 001384	2,870	이사감	20170930
정**영	75 **** -***** *	140001 2017 08 2 570 001542	5,790	기타	20170930
송**호	65 **** -***** *	140001 2017 08 2 590 001428	545,540	기타	20170930
김**태	66 **** -***** *	140001 2017 08 2 590 001454	454,330	이사감	20170930
박**우	78 **** -***** *	140001 2017 08 2 590 001482	365,420	기타	20170930
양**정	69 **** -***** *	140001 2017 08 2 590 001577	376,710	기타	20170930
김**주	76 **** -***** *	140001 2017 08 2 590 001597	14,920	기타	20170930
이**식	66 **** -***** *	140002 2017 08 2 460 000105	742,690	수령인없음	20170930

남원시 공고 제2017 - 1253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8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5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8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
3. 납부기한 : 2017. 9. 30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8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세액	공고사유	간주납기
한**용	72 **** -***** *	106001 2017 08 2 380 004598	18,3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 소불명	2017093 0
소**자	49 **** -***** *	106001 2017 08 2 460 004613	4,340	기타	2017093 0
이**식	71 **** -***** *	106001 2017 08 2 470 004686	13,610	기타	2017093 0
김**기	64 **** -***** *	106001 2017 08 2 510 004720	3,6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 소불명	2017093 0
오**순	68 **** -***** *	106001 2017 08 2 570 004687	22,030	이사감	2017093 0

남원시 공고 제2017 - 1254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5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
- 3. 납부기한 : 2017. 9. 30
-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세액	공고사유	간주납기
유**회** **성** 에**치	21 **** -*****	140003 2017 06 2 340 000059	19,190	수취인,주소,거 소,영업소불명	20170930
농**회**법** * ** * **스**어	21 **** -*****	140003 2017 06 2 470 000098	49,600	수취인,주소,거 소,영업소불명	20170930
유**회**천**의** 침	21 **** -*****	140003 2017 06 2 570 000064	833,460	수취인,주소,거 소,영업소불명	20170930
농**회**법**주** 회**오**목	21 **** -*****	140003 2017 06 2 570 000076	1,750,830	기타	20170930
주**건**	21 **** -*****	140003 2017 06 2 590 000065	1,195,800	이사감	20170930
신**건**주**회**	17 **** -*****	140003 2017 06 2 590 000087	14,359,900	기타	20170930

남원시 공고 제2017 - 1255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7월 수시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5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7월 수시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
3. 납부기한 : 2017. 9. 30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7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7월 수시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개인(법인) 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간주납기
권**남	58 **** -*****	106001 2017 07 2 570 003642	12,140	기타	20170930
이**순	56 **** -*****	106001 2017 07 2 570 003737	3,210	이사감	20170930
유**환	76 **** -*****	106001 2017 07 2 590 004332	21,250	기타	20170930

남원시 공고 제2017 - 1257

공시송달공고

2017년 7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5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7년 7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
- 3. 납부기한 : 2017. 9. 30
-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7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단위:원)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간주납기
이**자	41 **** -*****	140004 2017 07 2 570 00313	91,320	기타	20170930

남원시 공고 제2017 - 1258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기타(반송함투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5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
- 3. 납부기한 : 2017. 9. 30
-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간주납기
박**민	67 *** -***** * *	106001 2017 06 1 570 002103	50,530	기타(반송 함투입)	20170930
권**남	58 *** -***** * *	106001 2017 06 1 570 010479	58,170	기타	20170930
유**	67 *** -***** * *	106001 2017 06 1 570 012193	166,890	기타	20170930
유**	67 *** -***** * *	106001 2017 06 1 570 020883	42,230	기타	20170930
유**	67 *** -***** * *	106001 2017 06 1 570 028701	27,880	기타	20170930
황**수	75 *** -***** * *	106001 2017 06 1 590 001017	133,750	기타	20170930
홍**미	73 *** -***** * *	106001 2017 06 1 590 006289	254,140	기타	20170930
홍**미	73 *** -***** * *	106001 2017 06 1 590 015811	101,640	기타	20170930
김**희	88 *** -***** * *	106001 2017 06 1 590 020075	63,600	기타	20170930

남원시 공고 제2017 - 1268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법령 및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안 제14조)

다.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27조 ~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92), FAX(063-620-671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2017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40px;">의견서 제출인 주소 :</p> <p style="margin-left: 100px;">성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전화 :</p> <p style="margin-top: 20px;">남원시장 귀하</p>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따른 법령 및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나.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안 제14조)
- 다.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27조 ~ 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 ~ 2017. 10.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 제43조의3,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를 “그 시행에”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을 “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
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
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제목“(운영 등)”을“(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는 법 제52조에 따라”를 “시장은 법제71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무 처리를 위하여”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한다”를 “작성·보관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조정외 반려 및 종결)”을“(조정외 거부와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려 또는 종결”을 “거부 또는 중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4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려 또는 종결”을 “거부 또는 중지”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 당사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운영 등)”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를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로 한다.

제24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로 한다.

제2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공동주택 감사”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감사 대상) ①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감사 요청) ① 제27조에 따른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반 구성
4. 감사에 드는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

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실시 및 결과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회·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보호) ① 시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2호, 제11호,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제43조의3,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p> <p>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p>	<p>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u>그 시행에</u>----- -----.</p> <p>제2조(적용 범위) ----- ----- ---- <u>「주택법」</u>----- ----- -----.</p> <p>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u>「공동주택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32조</u>----- ----- -- 2. <u>법 제33조</u>----- ② ----- ----- ----- <u>법 제81조제1항</u> -----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생략)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

④ (생략)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⑦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

<신 설>

제8조(운영 등) 이 조례는 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분쟁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

-----.

제10조(기능) -----
-----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하는 사항을 말한다.

1. 2. 삭 제

제13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③ 삭 제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16조(조정외 반려 및 종결) ①

-----.

제13조(간사) ① -----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

② -----
----- 작성
· 보관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선정서류
-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외 거부와 중지) ① -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조정)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운영 등)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임대

----- 거부 또는 중지
-----.

1. 법 제18조-----

2. ~ 6. (현행과 같음)

② ----- 거부 또는 중지 -----
-----.

제17조(조정)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신청 당사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등)①·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2. (생략)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5. (생략)

④ 삭제

⑤·⑥ (생략)

제26조(운영 등)① (생략)

②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신설>

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

제24조(구성 등)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

4.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 등)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장 공동주택 감사

제27조(감사 대상) ①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 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감사 요청)① 제27조에 따른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

<신 설>

제27조 · 제28조 (생략)

<신설>

<신설>

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 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 제35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제29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감사기간
- 2. 감사의 범위
- 3. 감사반 구성
- 4. 감사에 드는 예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사반의 구성)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

<신 설>

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건축사 ·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실시 및 결과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